

수 신 자 내부결재
(경 유)
제 목 2023년 예산 집행 기준 수립

관련 법령, 기준 등에 따라 2023년도 예산 집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자 합니다.

1. 목적

- 가. 관련 법령, 지침, 규정 등에 따라 예산 집행 기준을 명시하여 예산 활용의 일관성 유지
- 나.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제·관리 기준을 구체화하여 예산집행의 원칙 확립

2. 관련 근거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다. 「2023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」 (행정안전부)
- 라. 「2023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」 (행정안전부)
- 마. 「2023년 서울시 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」 (서울특별시)

3. 2023년 예산 집행 기준 개요

- 가. 시행 기간 : 2023. 1. 1. ~ 12. 31.
 - 나. 주요 내용
 - 예산 변경 및 이월 기준
 - 주요 인건비, 경비 등 예산 집행 기준
 - 2023년도 주요 변동사항: 인건비(가족수당), 경비(특근매식비, 관서업무비 등)
- 지급 기준 및 방법 등 집행 지침 현행화
- ※ 상기 세부 내용 및 주요 변동 사항은 ‘붙임 1’ 참조

4. 행정 사항

가. 본 기준은 결재가 완료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

나. 본 기준은 관련 법률, 규정 및 지침 제·개정 등에 따라 시행 기간 중 변경 가능

다. ‘붙임 1’ 외 사항은 관련 규정 및 내규 등에 따르며, 필요 시 별도 기준 수립 후 시행

라. 차년도 예산 집행 기준 수립 전까지 본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 집행

붙임 1. 2023년도 예산 집행 기준 1부

2. 일상감사 요청서 1부. 끝.

팀원	2023.01.20. 이현아	팀장	대결 2023.01.20. 홍재선	본부장	2023.01.20. 탁정삼	대표이사	2023.01.30. 길기연
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

협조자 노준식

시행 기획예산팀-199 (2023.1.30.)

접수

우 03190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85 (관철동, 삼일빌딩) 6층

/ <http://www.sto.or.kr>

전화 02-3788-0872 전송 02-3788-0887 / leeh@sto.or.kr

/ 부분공개 (7)